

춘천지방법원 2023. 8. 23 선고 2022가단34186 판결 [진정명의회복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정진 담당변호사 박영생

피 고 1. E

2. F

3. G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8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,

가. 원고 A, B에게 강원 화천군 H 전 5,524㎡ 중 각 4704/14112 지분에 관하여,

나. 원고 C, D에게 위 가.항 기재 토지 중 각 1932/14112 지분에 관하여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
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안석

